

대전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가합103911(본소), 2020가합103928(반소) 판결
[건물명도(인도) · 부속물매수청구 등]

전 문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승룡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희정

변론 종결2020. 9. 17.

판결 선고2020. 10. 1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140,000원 및 2020. 4.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42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8.부터 2020. 10. 15.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 중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2.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에게 29,1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1)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5. 12.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각 재혼)였으나, 현재는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확정된 사이이다.

나. 원고의 상해 등 범죄행위 및 형사판결 확정

원고는 2018. 4. 18.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4189호로 '2017. 6. 11. 01:00경 세종특별자치시 C, D동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가 F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의 뺨을 수회 때리며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식탁 위에 놓아 협박하였으며, 같은 날 05:00경 다시 피고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우측 횡돌기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8. 4.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혼 소송 진행 및 확정

1) 원고와 피고는 대전가정법원 2017드합5436(본소), 2017드합5962(반소)로 각 이혼 등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이혼 소송')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9. 2. 13.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와 피고의 각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가 각 소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의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2) 원고와 피고가 각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9. 10. 31. 모두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 및 점유관계

1) 원고는 2014.경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인 G(주)와 임대차보증금 172,900,000원, 임차인 원고, 임대무기기간(5년), 임대무기기간 1/2 경과후 분양 전환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다.

2) 피고는 2016. 5.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호증, 을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혼인생활 중인 2014. 4. 30.경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 명의로 임차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위 이혼소송에서 각 소유하던 적극재산의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68,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임차한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되, 이 사건 이혼 소송 확정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매월 차임 1,428,000원을 지급해야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자이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혼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각 소유하던 적극재산의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68,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 및 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이 없는 상태에서의 월차임은 1,428,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이혼소송 확정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점유할 권한이 없어진 2019. 11. 1.부터 2020. 3. 31.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7,140,000원 및 2020. 4. 1.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2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에 인테리어 비용 7,700,000원, 불박이 및 맞춤 가구 3,360,000원, 가구 3,400,000원, 맞춤형 가전제품 4,142,000원, 합계 19,142,000원을 피고가 지출하였다. 원고는 유익비 상환청구 또는 부속물 매수청구를 하는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해야 한다.

2017. 6. 1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해 및 특수협박으로 피고는 요추골절 등으로 5주 진단을 받고, 1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한 현재까지도 원고의 폭행 및 상해로 우울증 및 긴장장애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던 것과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것으로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한 소라고 본안전항변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이혼소송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다호에서 정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인 반면, 이 사건 소 중 위자료 청구 부분은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이므로 그 소송물이 다르고, 피고가 주장하는 인테리어 비용 및 가구 비용 등이 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적극재산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반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유익비 및 부속물 매수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것이 아닌 임차인인 원고의 배우자로서 공동 점유하고 있다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소송 확정으로 점유권원을 상실한 것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유익비 또는 부속물 매수 청구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상해 및 특수협박 등의 불법행위로 피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불법행위 횡수,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할 위자료 액수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서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1.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10.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종록

판사문지연

판사이원진

별지

1) 피고의 2020. 4. 21.자 반소장 및 2020. 9. 16.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소장'으로 되어 있으나, 반소장의 오기로 보인다.